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속영장 집행기관에 교도관 추가 등〉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8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희승의원 등 20인
2. 발 의 일: 2025. 2. 7.
3. 회 부 일: 2025. 2. 10.

II. 제안이유

법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대부분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보안관리대는 과거와 달리 법원경위 직렬뿐만 아니라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지요원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상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집행 보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법원경위’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법정구속을 집행보조하거나 감치재판을 집행하는 실무에 맞지 않음.

이에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
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권한을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을 법원경위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제81조제2항, 제151조).

현행	개정안
<u>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u>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u>司法警察官吏가</u>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が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u>법원경위</u>에게 補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u>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u> ① --- ----- <u>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u>--- -- . ----- ----- -----. ② ----- ----- ----- . ----- ----- ----- -----<u>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u>----- -----. ③ (현행과 같음)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 <u>법원경위</u> 또는 <u>법원사무관등</u> 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 ----- ----- <u>법원공무원</u>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2. 개정안 검토

가. 구속영장 집행의 개관

구속영장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로 인치(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데려가는 것)하여 구금하는 형사절차임. 이는 수사나 재판의 원활을 위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현행법상 구속영장 집행은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교도관이 집행¹⁾하고 있음.

-
- 1)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나. 감치 집행 제도 개관

감치(監置)란 법원이 결정으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구금하는 제도임. 이는 형벌이 아닌 민사적·행정적 제재수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감치는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성격의 제재이다”라고 판시²⁾ 하였으며, 감치를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성격의 간접강제 수단으로 보고 있음. 또한, 감치는 조건부 구금의 성격을 가지며,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석방되는 특징이 있음.³⁾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집행·감치명령의 집행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에 명문화하여, 구속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원 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감치 명령의 집행기관에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을 “법원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모든 법원공무원에게 구속영장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구속영장 집행권한을 가진 법원 내 인력의 범위를

2)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

3) 조용호, 『헌법재판의 길』, 박영사(2020년), 702-703면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3